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3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22. 3. 14.(월)

검 토 안 건	발 의
(가칭)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김동원)

검 토 보 고

(전문위원 김동원)

1. 검토안건

- 안건명 : (가칭)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2. 제출경위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(마포중앙도서관)
- 제출일 : 2022. 2. 28.
- 회부일 : 2022. 3. 4.(의안번호 : 22- 23)

3. 제출이유

'22년 7월 말 도화동에 오픈예정인 관광호텔에 호텔 투숙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설치하고 독서문화 향유 등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 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(가칭) 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 사무

나. 민간위탁(신규) 내용

- 1)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2. 11. 1. ~ 2025. 10. 31.)
- 2)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3)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

-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관리
- 도서 열람, 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
-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, 운영
- 도서관 물품 및 시설 관리,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
4) 위탁시설 개요

- 위치 : 마포구 마포동 309-1(지하5층~지상 24층 중 1층)
- 규모 : 835m² (도서관 시설 면적)
 - 전용면적 642.19m², 공용면적 192.81m²

운영인력	열람석	장서수
관장 1명 사서직원 1명	110석	약 20,000권

- 위치도 및 건물 조감도



5)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소요예산 : 101,770천원(연간 예상 운영비의 2개월 분)

※ 최초년도 물품구매 등 소요비용 : 사인물제작(10,000천원), 자산취득비(60,837천원)

- 산출근거

구분		금액	비고
인건비	직접인건비	9,383천원	관장 1명, 사서직원 1명 기본급
	간접인건비	8,745천원	제수당, 퇴직금,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
운영비	사무관리비	16,030천원	소모품비, 사인물제작, 인쇄비 등
	공공운영비	4,875천원	관리비, 렌탈료, 통신비 등
	행사운영비	1,500천원	도서관 개관 행사 준비 등
	업무추진비	400천원	부서 업무추진비
자산취득비	자산취득비	60,837천원	도서관리시스템, 분실방지게이트 등 12종
합계		101,770천원	

다. 추진일정

- '22. 9월: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
- '22. 10월: 추경예산 편성 및 수탁기관 선정
- '22. 11월: 위탁운영 개시

5. 관계법령

- 가. 『지방자치법』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및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나. 『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6조(운영 및 관리)

6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『지방자치법』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) 및 『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』 제6조(운영 및 관리) 규정에 따라 “(가칭)도화동 공공도서관”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.

- 위탁운영 시설의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2025.10.31.까지 3년으로 하고, 위탁사무의 범위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은
 -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관리
 - 도서 열람·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
 -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·운영
 - 도서관 물품 및 시설 관리,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.

- 종합 검토의견은
향후 설치 될 “(가칭)도화동 공공도서관”은 기부체납지인 마포동 309-1 관광호텔 내 지상 1층 835㎡ (약 253평)의 공간에 열람석 110석, 장서 20,000권 규모로 설치되는 시설로서,

호텔 투숙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설치로 그 동안 인근에 공공도서관 부재로 인한 지역 주민 욕구를 해소하고 독서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독서공간 마련, 독서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공공도서관은 주거지역과 거리가 있고 독립된 건물이 아닌 관광호텔 내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홍보 등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한 내실 있는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[관련법규]

<지방자치법>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6조(운영 및 관리)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.

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립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